

「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7년 6월 15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17년 6월 20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29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17년 6월 20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과장 이정익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업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률을 축소하고,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대체취득 요건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를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 정비
 - 대체취득 규정 명확화(안 제2조제4항)
 - 대체취득 추정조항 보완(안 제2조제5항)
-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을 축소(안 제8조)
 - 100분의 100 → 100분의 50
-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(안 제9조)
 - 2017.12.31. → 2018.12.31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오정희)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정비하고, 기업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는 등 법령 개정 취지에 맞게 개선·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2017년”을 “2018년”으로 한다.

제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④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만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한다.

1.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말소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
2.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취득한 날 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이전등록(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)하고 다시 취득하는 경우

제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, 혼인, 해외이민, 운전면허취소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한다. 다만,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

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,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제50조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50조제1항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하고 제1항제1호 중 “제50조제1항에 따른”을 “제50조제1항 또는 「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」 제39조제1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100분의 10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2017년”을 “2018년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1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) 법률 제3조에 따라 법 제3조의2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.